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2.

법제사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. 21. 박희승의원 등 18인

나. 회부일자 : 2025. 1. 2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 (2025. 9. 24.) 상정

제431회 국회(임시회)

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(2026.2.11.) 상정/심사

제2차 전체회의(2026.2.1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대안
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박희승의원)

2023. 11. 17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,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‘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’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

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.

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·전달책·인출책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는 주로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.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음. 예컨대 2024. 7.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% ~ 18%에 이르고 있고, 일부 법원의 경우 전체 형사 합의부 사건 중 30%를 상회하기도 함.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

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,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판사로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박병섭)

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의 구성요건이 넓어지고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, 사건의 전형성 또는 중대성에 있어 기존의 보이스피싱

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, 형사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보다 단독 관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단기이며,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임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제1소위원장: 김용민의원)

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